

<영 제75조2>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과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 법제180조제2호, 영제131조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정의도 취득세의 건축물 정의를 인용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만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모두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전 인텔리전트 빌딩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면서도 재산세 과세기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모순을 이번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법 제180조의 제2호>

2. 建築物

第104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다만, 住宅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